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

발의연월일 : 2023년 4월 7일

발 의 자 : 김경이, 소형준, 정해숙, 양순임, 경수현, 김육영, 정기혁, 정병기, 강수진

1. 제안이유

성북구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을 위하여 실종예방 기관·단체 협력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며, 실종예방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달장애인 실종 정의, 기본계획 수립 시 실종예방 기관·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규정, 실종예방을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지원 사업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항, 안 제6조제2항제6호, 안 제6조의2제1항제10호)

나.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기간 5년 이내로 규정(안 제8조의2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협조부서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다.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라. 입법예고 : 2023. 4. 7. ~ 2023. 4.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을 “설치·운영하는”으로 한다.

3.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제6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립지원”을 “자립지원 및 실종예방”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자립지원”을 “자립지원 및 실종예방”으로 한다.

6. 실종예방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사업
5.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8. 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사업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
10.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을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의 제목 “(평생교육센터 지정)”을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5. ---------- 설치·운영하는 ----------.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자립지원 및 실종예방----------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실종예방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7. ----------자립지원 및 실종예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사업 5.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8. 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사업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 10.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평생교육센터 지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 설>	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 설>	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